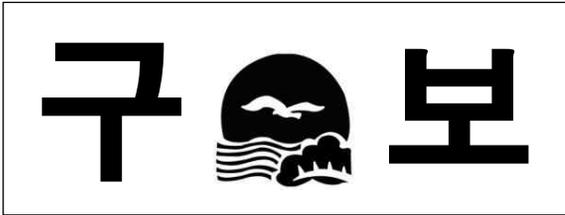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32 호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1028호(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1029호(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8

훈 령

-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403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22
-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404호(인천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30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071호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4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1072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규 칙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2023년 조직진단 결과 부서 간 기능이관 요청사항을 분장사무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서별 이관 사무 등 정비(별표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1028호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세무1과 분장사무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로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채권관리 및 보고
- 11.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 12. 세무전산 관리
- 1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4.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 15. 시가표준액 결정
- 16. 시가표준액 조사
- 17. 과세자료 수집
- 18. 재산세 물납·분납 허가
- 19.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6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며, 제23호(중전의 제29호), 제26호(중전의 제32호), 제30호(중전의 제36호), 제32호(중전의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3. 지방세 정리보류 등
- 26.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지방세·세외수입)
- 30. 세외수입 부과·징수
- 32. 세외수입 정리보류 등(과년도)

별표 1의 복지정책과 분장사무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호를 삭제한다.

-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

별표 1의 건축과 분장사무 중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주택법」 관련)

별표 1의 도시행정과 분장사무 중 제20호부터 제49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복지지원과 분장사무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업무 총괄

별표 1의 건축허가과 분장사무 중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주택법」 관련)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제10조 관련)		[별표 1] 구 본청 실·과 분장사무(제10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무1과	1. ~ 6. (생 략) 7.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8. ~ 9. (생 략) 10. 경영수익사업 추진(총괄) 11. 채권관리 및 보고 12.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13. 세무전산 관리 14.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구세) 15.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구세) 16.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17.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구세) 18. 과세자료 수집 (구세) 19. 재산세 물납·분납 허가 20.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시세) 2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시세) 22.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시세) 23.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시세) 24. 과세자료 수집 (시세) 25.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시세) 26.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서 처리 27. 지방세채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28. 지방세 체납정리계획 수립 29. 지방세 결손 처분 30. 지방세 독촉 및 가산금 조정 결의 31. 관허사업 제한 32.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번호판 영치 34.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및 검찰 고발 35.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정리·조정(총괄) 36. 세외수입 부과징수(과년도) 37.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과년도) 38. 세외수입 결손처분(과년도)	세무1과 1. ~ 6. (현행과 같음) 7.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8. ~ 9. (현행과 같음) < 삭제 > 10. 채권관리 및 보고 11.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12. 세무전산 관리 1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15. 시가표준액 결정 16. 시가표준액 조사 17. 과세자료 수집 18. 재산세 물납·분납 허가 19.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사청구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20.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서 처리 21. 지방세채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22. 지방세 체납정리계획 수립 23. 지방세 정리보류 등 24. 지방세 독촉 및 가산금 조정 결의 25. 관허사업 제한 26.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지방세·세외수입) 27. 자동차 번호판 영치 28.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및 검찰 고발 29.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정리·조정(총괄) 30. 세외수입 부과징수 31.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과년도) 32. 세외수입 정리보류 등(과년도)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사 무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1. ~ 13. (생 략)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5. ~ 35. (생 략) 36.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업무 총괄	복지정책과	1. ~ 13. (현행과 같음)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 15. ~ 35. (현행과 같음) < 삭제 >
건축과	1. ~ 25. (생 략) 26.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주택법 제32조 관련) 27. ~ 37. (생 략)	건축과	1. ~ 25. (현행과 같음) 26.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주택법」 관련) 27. ~ 37. (현행과 같음)
도시행정과	1. ~ 19. (생 략) < 신설 > 20. ~ 49. (생 략)	도시행정과	1. ~ 19. (현행과 같음) 2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 21. ~ 50. (현행 20. ~ 49.와 같음)
복지지원과	1. ~ 4. (생 략)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6. ~ 27. (생 략)	복지지원과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업무 총괄 6. ~ 27. (현행과 같음)
건축허가과	1. ~ 26. (생 략) 27.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주택법 제32조 관련) 28. ~ 41. (생 략)	건축허가과	1. ~ 26. (현행과 같음) 27.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 (「주택법」 관련) 28. ~ 41. (현행과 같음)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부서별 사무조정에 따른 전결처리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 개정 (별표 1)

- 부서별 사무이관 전결사항 및 신규(누락)사무 추가
- 업무의 성질에 맞도록 기안 및 전결권자 상·하향 조정 등

나.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 개정 (별표 2)

다.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 개정 (별표 3)

라. 띄어쓰기,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1029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 “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에”를 “다른 규칙에”로,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인·허가사항”을 “인허가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인·허가 사항”을 “인허가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 중 “인·허가 사항”을 “인허가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별표”를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로, “고려 하되”를 “고려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을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을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으로, “명기하고”를 “기재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결제를 요하는 사항중”을 “결제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사무”를 “해당 사무”로, “통할하는”을 “총괄하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결사항의 보고등)”을 “(전결사항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결하는 사항중”을 “전결사항 중”으로, “다음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통계등”을 “통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면허등”을 “면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결제절차등)”을 “(결제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안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결제함에 있어서”를 “결제할 때”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공통 단위사무 중 제14호에 아목을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공 통	14.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아. 전자증지수입 일일 결산	기안	○				

별표 1 총무과 단위사무 중 제44호를 삭제하고, 제45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제44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며, 제48호나목(중전의 제49호나목), 제53호가목(중전의 제54호가목), 제54호(중전의 제55호), 제55호가목(중전의 제56호가목) 및 제58호(중전의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호를 삭제하고, 제61호부터 제89호까지를 각각 제59호부터 제87호까지로 하며, 제67호(중전의 제69호), 제68호(중전의 제70호), 제69호가목(중전의 제71호가목), 제74호가목(중전의 제76호가목), 제81호가목(중전의 제83호가목) 및 제87호(중전의 제8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총무과	48. 지방공무원 임용(승진, 전보, 전입, 전출, 징계) 나. 7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53. 근무성적 평정 및 서열 명부작성 가. 5급 이상 공무원 54. 자체교육훈련	기안	기안			○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55. 사기진작 가. 장기제직자 해외연수계획 수립	기안					○
	58.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6급 이하 공무원	기안	기안			○	○
	67. 표창 가. 구청장 표창계획 수립	기안					○
	나. 모범공무원등 표창대상자 추천	기안		○			
	68. 자치단체간 협의 및 일반업무	기안		○			
	69. 국내·외 연수 및 견학 가. 국내·외 연수, 견학, 방문 기본계획	기안					○
	74. 국내외 및 남북 교류 업무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81. 노조관련 교육·연수·홍보계획 수립 가. 교육·연수 및 홍보계획	기안		○			
	87. 자원봉사센터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및 임면사항 승인	기안					○
	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면사항 승인	기안		○			
	라.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기안		○			
	마.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 문화관광과 단위사무 제7호 중 “인천개항·자장면박물관”을 “인천개항·짜장면 박물관”으로 하고, 제15호를 삭제하며 제16호부터 제22호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1호로 한다.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호·제25호를 삭제하며, 제26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제25호다목(중전의 제28호다목)을 삭제하고 제25호다목·라목(중전의 제28호라목·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관광과	22.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가. 출연금 예산안 승인 나. 기구설치 및 직제개편 승인 다. 정관 변경 승인 라. 제규정 변경 승인 마. 운영지원 계획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바.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교부 사.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아. 그 밖의 운영지원 25. 관광기획에 관한 사항 다.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라. 업무협조 및 자문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별표 1 재무과 단위사무 중 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재무과	17. 예산·재무회계 결산 바. 결산검사 (1) 결산검사 계획수립 (2) ~ (3) (현행과 같음)	기안			○		

별표 1 세무1과 단위사무 중 제7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호를 삭제하며, 제20호·제21호를 각각 제19호·제20호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1과	7. 일반세정 마.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1) ~ (2) <삭제>	기안	○				

별표 1 민원지적과 단위사무 중 제6호다목, 제12호마목을 삭제하고, 제12호 및 제20호 아목 및 제64호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민원지적과	12. 전자민원(정부24) 이용활성화 추진 가. 정부24창구 민원 및 어디서나민원 즉결처리 나. 정부24창구 및 대학민원 수수료 정산 다. 인터넷제보 민원처리 라. 통합창구의 각종 제증명 조회 및 회보 20. 기록물 관리 아.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의 관리 및 이관 64. 지적제조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지적제조사 측량·조사 등의 위탁	○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별표 1 복지정책과 단위사무 중 제8호를 신설하고,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복지정책과	8.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동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해촉	기안			○		
	다. 그 밖에 협의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1 안전관리과 단위사무 중 제53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75호부터 제77호까지를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안전관리과	5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무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기안		○			
	아. 결격사유 조회	○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무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기안		○			
	사.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아. 사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자. 결격사유 조회	○					
	55. 도시가스 사업법에 관한 사무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기안		○			
	아. 사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자. 결격사유 조회	○					
	75.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다. 모니터링 요원 관리	기안		○			
	76.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가.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설치 및 유지보수	기안		○				
다. 민원처리 및 의견수렴	기안		○				
라. 유관기관(부서) 업무협의 및 조정	기안		○				
77.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립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나.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3자 제공 다. 자체 점검결과 보고	기안		○			
		기안		○			

별표 1 도시계획과 단위사무 중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호를 신설하며, 제 20호·제21호를 각각 제21호·제22호로 하고, 제21호바목(중전의 제20호바목)을 삭제한다.

제23호를 신설하고, 제24호·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7호를 삭제하고, 제 2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제27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계획과	19. 도시계획 일반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협의	기안					○
	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경미한 변경)	기안		○			
	라.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기안			○		
	20. 도시계획위원회						
	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기안				○
	나. 도시계획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기안				○
	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안					○
	라. 분과위원회 운영	기안				○	
	마.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23. 국토이용정보체계						
	가. 도시계획현황통계(UPSS) 입력 및 관리	기안			○		
	나.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관리	기안			○		
	24.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가. 개발행위(변경) 허가	기안			○		
	나. 개발행위(변경) 협의	기안			○		
	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안			○		
	라. 개발행위 준공	기안			○		
	25. 불법개발행위 조치						
	가.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	기안			○		
	나. 행정 예고문 발송	기안			○		
	다. 불법행위자 고발 등 행정조치	기안			○		

별표 1 건축과 단위사무 중 제8호나목·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며, 제28호마목, 제3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건축과	8. 건축(가설)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미만의 건축물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의 건축물 라. 갈등유발 예상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관련)	기안		○			
	28.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마. 지원금 지급	기안		○			
	31. 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법」 관련) 가. 설립·변경·해산 인가	기안			○		
	3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기안	○				
		기안					○
		기안					

별표 1 도시항만개발과 단위사무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도시행정과 단위사무 중 제17호부터 제45호까지를 제18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고, 제17호를 신설한다. 제47호마목(중전의 제4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행정과	17.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가. 일반 가족관계등록신고	기안	○				
	나. 간이직권정정 및 기재 허가	기안	○				
	47. 지적제조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지적제조사 측량·조사 등의 위탁	기안		○			

별표 1 복지지원과 단위사무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신설하며, 제2호가목,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다목부터 제5호사목까지를 신설한다.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복지지원과	1. 이웃돕기사업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운영	기안		○			
	2. 지역자원 발굴관리 및 연계 가. 지역자원 관리 및 연계	기안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가. (현행과 같음) 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 다. (현행과 같음)	기안			○		
	5. 통합사례관리업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 라.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마.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종결 바. 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사. 민·관통합사례관리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10.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총괄 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허가 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원 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변경 허가신고 마.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업정지, 경고, 시설장 교체 요구 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고 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기안	○ ○ ○ ○ ○ ○ ○	○ ○ ○		
	11.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 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기안 기안 기안			○ ○ ○		
	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및 관리 가. 기부식품제공기관 운영 및 지도감독 나. 기부식품제공기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다. 기부식품제공기관 설치신고	기안 기안 기안		○ ○ ○	○		

별표 1 건축허가과 단위사무 중 제9호나목·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며,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제27호를 신설하며,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건축허가과	9. 건축(가설)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미만의 건축물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의 건축물	기안 기안		○ ○	○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라. 갈등유발 예방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방 시설 사전고지 조례」 관련)	기안					○
	27. 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법」 관련)						
	가. 설립·변경·해산 인가	기안			○		
	3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기안	○				

별표 1 도시농업과 단위사무 중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농업과	4.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별표 2 보건소 보건행정과 단위사무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한다.

제4호(중전의 제5호), 제12호(중전의 제13호), 제13호(중전의 제14호) 및 제19호부터 제21호(중전의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고
		실무급	담당급			
보건행정과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기안		○		
	라. 구강건강 관련 홍보 및 교육	기안		○		
	마. 구강보건실 운영	기안		○		
	바. 치과진료비 청구 및 사후관리	기안		○		
	1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폐업, 변경 및 양도·양수 신고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현행과 같음)					
	13.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변경,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기안	○			
다. 신고증 재발급	기안	○				
라. 지도점검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고
		실무급	담당급			
	1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항					
	가. 등록	기안		○		
	나. 변경등록 및 휴·폐업, 재개 신고	기안	○			
	다. 지위승계	기안	○			
	라. 지도점검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20.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신고	기안		○		
	나. 변경신고(말소포함)	기안	○			
	다. 운용 통보 확인증 개발급	기안	○			
	라. 지도점검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2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설치신고	기안		○		
	다. 양도, 폐기, 이전 신고	기안	○			
	라. 지도점검	기안	○			
	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2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단위사무 중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보건소장	비고
		실무급	담당급			
국제도시보건과	9.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보호신청 및 진단의뢰, 입원조치	기안		○		

별표 3 동 단위사무 중 제13호가목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사무명	담당자		동장	국장	비고
	실무급	담당급			
13. 기타 가. 기타 일반 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공개		기간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10조제2항에 따라 <u>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10조제2항에 따라 <u>인천광역시 중구청장</u>----- ----- <u>규정하여</u> ----- --- <u>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u>-----.</p>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u>규칙</u>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u>규칙</u>에 의하여 <u>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u>.</p>	<p>제2조(적용 범위) ----- ----- <u>다른 규칙</u>에 ----- ----- <u>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u>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u>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p>
<p>1. (생략)</p> <p>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 다. (생략) 라. <u>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u></p> <p>3. 국장의 전결사항 가. ~ 다. (생략) 라. <u>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u></p> <p>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 다. (생략) 라. <u>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u> 마. (생략)</p> <p>5.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인허가 사항</u>----- --</p> <p>3.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인허가 사항</u>----- --</p> <p>4.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인허가 사항</u>-----</p> <p>마.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⑤ (생략)</p> <p>⑥ <u>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u>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u>고려 하되</u>,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동은 소·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p> <p>⑦ <u>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u>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p> <p>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u>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집단 민원 발생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 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구청장의 결재를 <u>요하는 사항중</u>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u>기획감사실장</u>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p> <p>②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u>기획감사실장</u>,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u>당해사무와</u> 관련부서를 같이 <u>통합하는</u>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u>전결하는 사항중</u>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u>다음의 각호</u>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별표 1에서 별표 3까지</u>----- ----- <u>고려하되</u>----- ----- ----- ----- -----.</p> <p>⑦ <u>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u> --- ----- ----- -----.</p> <p>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u>제4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u>----- ----- ----- ----- <u>기재</u> <u>하고</u>----- -----.</p> <p>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 <u>결재사항 중</u> ----- - <u>기획예산실장</u>-----.</p> <p>② ----- ----- <u>기획예산실장</u>----- ----- ----- ----- <u>해당 사무</u>----- -- <u>총괄하는</u> ----- --.</p> <p>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u>전결사항중</u> ----- <u>다음 각 호</u> -----.</p>

현행	개정안
<p>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 계등</p> <p>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p> <p>3. (생략)</p> <p>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 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1. ----- 통 계 등</p> <p>2. ----- ----- 면허 등</p> <p>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결재절차 등) ① ----- ----- 하여야 ----.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결재할 때 ----- ----- -----.</p> <p>④ (현행과 같음)</p>

훈 명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사유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지역별(원도심, 영종·용유)로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 (별표 1)

- 1) 민원지적과 (27 → 26) : 행정8급 (△1)
- 2) 도시행정과 (26 → 27) : 행정8급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훈령 제403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실·과별 지방공무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단위: 명)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합계			606	
기획예산실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세무1
		7급	7	행정6, 전산1
		8급	5	행정5
9급	1	행정1		
감사실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시설1, 행정·시설1
		7급	2	행정2
		8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홍보체육실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방송통신1
		6급	4	행정1, 행정·전산2, 행정·방송통신1
		7급	10	행정4, 전산4, 통신운영1, 방송통신1
8급	4	행정2, 방송통신1, 행정·전산1		
총무과	계		35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32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7	행정5, 사무운영1, 운전1
		7급	8	행정8
		8급	12	행정12
		9급	1	행정1
별정직	소계	2		
	6급	1	비서요원1	
	7급	1	비서요원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문화관광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시설2
		7급	6	행정4, 시설2
	8급	8	행정7, 행정·공업·시설1	
재무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5급	1	행정1
		6급	8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시설1, 시설1, 사무운영1, 운전3
		7급	8	행정4, 행정·세무1, 행정·공업1, 시설1, 운전1
		8급	5	행정2, 세무1, 전산1, 시설1
	9급	2	행정2	
세무1과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7	세무6, 행정·세무1
		7급	9	세무9
		8급	4	세무2, 전산1, 행정·세무1
	9급	1	세무1	
민원지적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2, 행정·시설2, 시설1
		7급	7	행정4, 시설2, 운전1
		8급	10	행정7, 시설2, 행정·시설1
	9급	3	행정3	
일자리경제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6, 행정·시설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복지정책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어르신장애인과		8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급	1	사회복지1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사회복지3
		7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건설과		8급	3	사회복지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계	24	
	일반직	소계	24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공업1, 시설3
	7급	8	행정2, 공업1, 시설3, 녹지·시설1, 운전1	
	8급	5	행정1, 시설2, 공업·시설1, 운전1	
	9급	4	행정1, 공업1, 시설2	
안전관리과		계	23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5	행정3, 행정·공업2
		7급	5	행정1, 공업1, 시설1, 행정·보건·환경1, 행정·시설·방재안전1
		8급	7	공업2, 방송통신1, 행정·공업2, 행정·방재안전2
		9급	4	행정1, 시설1, 방재안전1, 사회복지·방재안전1
도시계획과		전문경력관 나급	1	화생방전담요원1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시설2, 녹지·시설2
		7급	3	행정1, 녹지1, 시설1
		8급	4	행정1, 녹지1, 행정·시설1, 운전1
	9급	2	녹지1, 녹지·시설1	
건축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3, 행정·시설1
		7급	8	행정1, 시설5, 행정·시설2
		8급	3	시설3
		9급	1	시설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도시항만개발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6	시설2, 행정·시설4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8급	2	시설2
	9급	1	행정1	
교통운수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3, 행정·세무1, 행정·시설1
		7급	9	행정5, 행정·세무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8급	8	행정7, 시설1
	9급	4	행정3, 세무1	
위생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보건1
		6급	3	보건1, 행정·보건2
		7급	3	보건1, 행정·보건1, 보건·식품위생1
		8급	4	행정1, 보건2, 행정·보건1
	9급	1	행정1	
환경보호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환경5
		7급	8	행정3, 환경2, 행정·환경1, 운전2
		8급	8	환경2, 행정·세무1, 행정·환경3, 운전2
	9급	3	행정1, 환경2	
도시행정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3, 행정·시설2
		7급	9	행정3, 시설4, 행정·시설1, 운전1
	8급	11	행정3, 공업1, 시설3, 행정·세무1, 행정·시설1, 운전2	
세무2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7	세무4, 행정·세무3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7급	7	세무5, 행정·세무2
		8급	4	세무3, 행정·세무1
		9급	1	세무1
복지지원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7급	4	사회복지4
		8급	4	행정1, 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3	
여성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평생교육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3
		7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간호1
	9급	5	행정3, 사회복지2	
친환경위생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6	보건1, 행정·환경2, 보건·환경1, 행정·보건·환경2
		7급	7	보건1, 환경2, 행정·보건1, 행정·환경2, 행정·보건·환경1
		8급	8	행정1, 보건4, 환경2, 행정·환경1
	9급	3	행정·환경1, 보건2	
기반시설과	계		24	
	일반직	소계	24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공업1, 시설1, 행정·공업1, 행정·시설3
		7급	8	행정2, 공업1, 시설2,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운전1
	8급	6	시설5, 행정·공업1	
	9급	2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내역
건축허가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1, 행정·시설3
		7급	6	시설2, 녹지1, 행정·세무·시설1, 녹지·시설1, 건축운영1
		8급	6	시설5, 행정·농업1
도시공원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3	행정·시설1, 행정·녹지2
		7급	6	행정1, 녹지3, 시설1, 녹지·시설1
		8급	4	녹지1, 행정·녹지1, 농업·녹지1, 운전1
교통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3	행정2, 행정·시설1
도시농업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농업1
		6급	3	행정·농업2, 농업1
		7급	5	농업2, 행정·농업1, 농업·수의2
해양수산과	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해양수산1
		6급	3	행정·해양수산1, 행정·시설2
		7급	4	해양수산2, 행정·해양수산1, 행정·시설1
	8급	3	행정1, 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1	
	9급	2	해양수산1, 해양수산·시설1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사유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제1조,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기준(제4조, 제5조)

다.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제8조)

라.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제9조, 제10조)

마. 영조물 배상등록(제11조)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훈령 제404호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인천광역시 중구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071호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 정 이 유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5조)
- 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6조~제7조)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7조, 제24조, 제29조)

□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0일(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여성정책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 주 소 : (우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청 여성보육과(여성정책팀)
- ▷ 전 화 : 032)760-7912 [FAX 032)760-6984]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앞에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문·심의하기”를 “심의·조정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을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을 “남녀평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장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p> <p>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양성평등위원회</u></p> <p>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조정하기 ----- ----- --.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서로 뽑는다</u>.</p> <p>③ ----- ----- ----- .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u>한다</u>.</p>	<p>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한다</u>.</p>
<p>제2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양성평등주간) ----- <u>법 제38조</u> ----- -----.</p>
<p>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u>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u>남녀평등</u>----- ----- -----.</p>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072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법 제34조2항→법 제34조3항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신설,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9호서식까지 삭제

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정보의 파기 위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 부과 개별기준 1목 신설(1차 600만원 / 2차 1,200만원 / 3차 2,400만원)

○ 부과 개별기준을 1목, 2목에서 1목, 2목, 3목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3년 7월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수렴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법무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우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1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 전화: 032)760-6044

○ 팩스: 032)760-6018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참고

6. **관련법령:** 붙임2 참고

7. **현행 조례:** 붙임3 참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 조제3항----- -----.</p> <p>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신 · 구별표대비

현 행	개 정 안																																		
<p>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p>	<p>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p> <p>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내 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처 분 기 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p>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p> <p>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 반 내 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처 분 기 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2.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400만원</td> </tr> <tr> <td>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body> </table>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2.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 반 내 용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2.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붙임 2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부칙 <제19305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제정) 2005.04.19 조례 제716호
(일부개정) 2015.09.21 조례 제1162호
(일부개정) 2016.05.30 조례 제1200호
(전부개정) 2017.07.24 조례 제12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7호,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서식

과태료 부과기준

-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부서용]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주민용]

의견수렴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제출인 : (인 또는 서명)